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2006. 2.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던 의료기기판매업 사무에 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추어 동법에 의거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업 등 제신고 사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임 (안 별표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입법예고(2006. 1.19 ~ 2006. 2. 8)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8.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등의 신고, 신고사항 변경, 폐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보건소장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중지명령,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동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보건소장
다. 과징금부과 및 징수	동법 제33조	보건소장
라. 청문	동법 제34조	보건소장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동법 제47조	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입 사 무			<별표> 위 입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7. (생략)	(생략)	(생략)	1.~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8.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8.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가.의료용구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u>	<u>약사법 제42조</u>	<u>보건소장</u>	<u>가.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신고 사항변경, 폐업 등의 신고</u>	<u>의료기기법 제16조</u>	<u>보건소장</u>
<u>나.지도감독(보고와 검사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u>	<u>동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동법 제67조 내지 제69조</u>	<u>보건소장</u>	<u>나.지도감독(보고와 검사등, 폐기, 사용 중지명령,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u>	<u>동법 제28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u>	<u>보건소장</u>
<u>다. 과태료부과</u>	<u>동법 제79조</u>	<u>보건소장</u>	<u>다. 과징금부과 및 징수</u>	<u>동법 제33조</u>	<u>보건소장</u>
		<신 설>	<u>라. 청문</u>	<u>동법 제34조</u>	<u>보건소장</u>
		<신 설>	<u>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u>	<u>동법 제47조</u>	<u>보건소장</u>
9.~19. (생략)	(생략)	(생략)	9.~1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